

# 한-중 FTA 시대, FTA 활용 시 유의점과 관세청의 지원 정책



김재일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 1. FTA 체결 현황 및 지원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까지 발효되었다. 바야흐로 FTA가 우리 기업의 생존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이르렀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15. 12월 기준)〉

구분	협정 발효 (14건, 51국)	협정 타결 (1건, 1국)	협상 진행 (4건, 22국)	여건 조성 (4건, 9국)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한-중-일, RCEP, 중미(6개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GCC, 일본
교역비중	67.3	0.2	7.9	9.3
누적비중	67.3	67.5	75.4	84.7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처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FTA 체결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FTA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실제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활용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정보·자금 부족 등 여러 사유로,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과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FTA 활용 주요 유의사항

대구에 소재한 A 기업은 FTA 활용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관세청 FTA 활용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도 차지했다.

세관과 협업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처를 변경하고, 어려운 원산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다.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 배양도 함께했다.

전략적으로 FTA를 활용한 결과, 작년 상반기에만 18억 원을 절감했고, 한-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총 532억 원의 혜택까지 기대된다.

A 기업과 같이 FTA 활용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사 제품의 관세가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려는 제품의 관세 인하 폭과 시기를 알려면 중국의 관세 양허표를, 반대로 수입 제품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의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면 된다.

FTA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수출업체는 우선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번호를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에는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었는지,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되었는지, 부분품의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분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확인서를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즉,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뿐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까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잘못되면 원산지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FTA 통관심사 시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어,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장·서명, 수출자·생산자의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통관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사후 원산지검 증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3. 관세청의 FTA 지원 제도

FTA 활용에는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복잡해 처음부터 기업들 스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에, FTA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과 세관현장에서 접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YES(Y: WHY, E: EASY, S: Simple) FTA'라는 브랜드도 도입했다. "FTA 활용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기업별 FTA 활용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의 전국 6대 본부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지원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에 'FTA-PASS'를 구축해주고, FTA 수출 활용 종합 컨설팅, FTA 계약상대국 세관 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 컨설팅, 기업의 생산 물품이 FTA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주는 컨설팅 중 기업이 선택한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FTA-PASS'는 국산 또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개발하여, 13,296개 업체에 보급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으며, 2015년에만 총 546개 기업이 컨설팅 혜택을 받았다. 546개 기업 중 472개 기업은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이 중 96%인 451개 기업이 컨설팅 이후 FTA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58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지정한 수출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2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세관을 방문하기 힘든 기업을 위해 농공·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FTA 수출 준비 단계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까지 One-Stop으로 종합지원하는 이동형 상담 버스다. 작년 한 해 동안 3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대구 등 FTA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를 누비며 988개 업체를 찾아갔다.

또한,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생·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상설 FTA 교육 프로그램인 ‘YES FTA 아카데미’를 6개 본부세관에 설치하여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특별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한-중 FTA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전국 34개 세관에 설치했고,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FTA 활용 컨설팅·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만여 대(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생생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다. 메일링 서비스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방법까지 FTA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기업의 CEO들이 수출확대 및 새로운 성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의 현장 상담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수출입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어려운 FTA 활용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다. 특히, 5년, 10년, 15년, 20년 등 장기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편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품목일 수록 조기에 FTA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시장개척까지 준비하면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세관 직원의 지원과 함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지원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